

# 위임전결 규정

2021. 12. 06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 정관 제49조(사무국)에 의거 체육회 사무국 제반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및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전결권자의 책임)** 본 규정에 의해서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결권자는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**제4조(전결사항)** ① 회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결재를 [별표 1] 구분에 의하여 위임 전결하게 된다.

②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 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 하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,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의 후결 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결재 및 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로 시행한다.

**제5조(전결사항의 특례)** ①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1.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

2.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
3.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② 팀별 소관 업무의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관련 업무는 사업1팀장(총괄팀장)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전결권한 표시)** 이 규정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경우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 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2021. 12. 06.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

# [별표 1] 위임전결 사항

업무내용		전결권자		회 장
		팀 장	사무국장	
1. 사업계획, 예산편성, 예산결산	기본 사업계획, 예산 편성 및 결산			○
	단위 사업의 실시 및 집행		○	
	단위 사업의 예산편성 및 결산		○	
2. 규정,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				○
3. 종목단체, 동체육회 임원의 인준			○	
4. 재산 취득 및 처분	재산 취득 및 처분(100만원 이상)			○
	재산 취득 및 처분(100만원 미만)		○	
	사무처 운영에 따른 일반 재산		○	
5.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안건 및 결의사항				○
6. 위원회 운영	위원 위촉 및 해임			○
	위원회 운영(안건)		○	
	계획의 시행		○	
7. 인사관계	정원의 조정			○
	직원 채용			○
	직원의 상벌			○
8. 지출 원인행위	100만원 초과와 공사, 제조, 물품구매			○
	100만원 이하의 공사, 제조, 물품구매		○	
	100만원 초과와 회원단체 보조			○
	100만원 이하의 회원단체 보조		○	
	경상적사업 및 유사 경비	100만원 초과		○
		100만원 이하	○	
	조직운영을 위한 특별판공비, 회의비, 섭외비	100만원 초과		○
		100만원 이하	○	
	급여(여비 포함), 회의비, 업무추진비 지출		○	
	급여 외 공과금, 차량유지비 등 정기적지출		○	
이미 방침이 결정된 회원단체 또는 개인의 정기적 보조금		○		

업무내용		전결권자		회 장
		팀 장	사무국장	
9. 지출업무	100만원 초과			○
	50만원 초과 ~ 100만원 미만		○	
	50만원 미만		○	
10. 특별기금 관리운영			○	
11. 수입 및 지출결의	수입결의		○	
	지출결의		○	
12. 월계표 작성 및 잔고 확인				○
13. 상근 임직원의 복무	임원의 해외 출장			○
	직원의 출장 및 휴가		○	
14. 예산의 정산보고				○
15. 회원단체 찬조금 영수 및 교부			○	
16. 제증명 발급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원천세신고영수증 등)		○		
17. 비품관리 및 소모품 관리(사업1팀)			○	
18. 차량의 관리에 관한 감독(사업2팀)			○	
19.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				○
20. 각종 조사 통계에 관한 사무		○		
21. 사무 인계·인수보고서 처리	사무국장			○
	팀장 이하		○	
22. 유관 기관과의 사무협조	정책사항			○
	정책사항 외		○	
23. 진정서 및 민원처리				○